

## 주택관리규정 개정(안) 신·구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6조(배정기준) ①(생략) ②(생략) ③ 입주자가 대학으로부터 이전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매월 부과금을 징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퇴거 통보후 1개월 이후에도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: 500,000원/월</li> <li>2. 퇴거 통보후 1년 이상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: 1,000,000원/월</li> </ol>	<p>제6조(배정기준)①(현행과 동일) ②(현행과 동일)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대학으로부터 이전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는 임대료 및 거주 관련 경비에 추가해서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매월 부과금을 징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전 통보후 1개월 이후에도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: 500,000원/월</li> <li>2. 이전 통보후 1년 이상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: 1,000,000원/월</li> </ol>	<p>제11조 규정에 따른 퇴거의 경우가 아닌, 아파트 배정 불응에 따른 부과금 징수임을 명확화 - 혼돈 방지를 위한 용어 변경</p>
<p>제11조(퇴거)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5조의 자격상실자</li> <li>2. 제9조의 의무사항 위반자</li> <li>3. 기타 총장의 퇴거 지시자</li> </ol>	<p>제11조(퇴거)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5조의 자격상실자</li> <li>2. 제9조의 의무사항 위반자</li> <li>3. 기타 총장의 퇴거 지시자</li> </ol> <p>② 퇴거 사유 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임대료 및 거주 관련 경비에 추가해서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매월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퇴거 사유 발생후 1개월 이후부터 3개월 이내까지: 500,000원/월</li> <li>2. 퇴거 사유 발생후 3개월 이후: 2,000,000원/월</li> </ol>	<p>퇴거 불응 시 손해배상 규정 명시 - 임대료의 2배 수준의 손해배상금 책정</p>